오렌지카운슬러 수퍼비전 프로그램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24. 10. 3 발행)

[목록]

1. 수퍼비전 정의(2p)
2. 수퍼바이저의 역할과 책임(2~7p)
3. 수퍼비전 프로그램 이용시 수퍼바이지(수련생)의 역할과 책임(7~9p)
4. 수퍼비전 프로그램 운영진의 역할과 책임(9p)

[별첨 1]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 규정(10~11p)

1. 수퍼비전 정의

- 수퍼비전은 상담훈련 과정에 있는 수퍼바이지와의 관계를 통해 수퍼바이지가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퍼바이지의 개인적 문제가 상담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찰하게 하여 개인적 성장과 인식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이다.

2. 수퍼바이저의 역할과 책임

- 수퍼비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퍼바이저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수퍼비전 과정에 윤리적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수퍼바이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퍼비전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

수퍼비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퍼바이저와의 신뢰관계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의 상담과정에서 결점이나 부족한 면을 감싸 주고 안아 주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수퍼바이지가 긍정적 분위기에서 수퍼비전을 받을 때 자신의 문제점을 쉽게 노출하므로 자신의 문제가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수퍼바이지의 자기 인식능력 증진

개인적 역동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함으로써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통찰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작업이 수퍼바이저의 책임이다. 수퍼비전을 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걸림돌을 수퍼바이저가 잘 파악하여 수퍼바이지의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수퍼바이저의 책임

(1) 내담자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책임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내담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가) 수퍼바이저의 언어적 보고를 통해 수퍼바이지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유추하여 내담자가 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자로부터 잘 제공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의 문제에 적절한 상담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적절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수퍼바이지에 대해 수퍼바이저가 확인해야 할 사항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 윤리조항을 숙지하고 있다.
(나)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과로하지 않으며 적당한 정도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을 돌본다.
(라) 자신의 상담 개입에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마) 수퍼비전에 자신의 형편없는 상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바) 자신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직권을 남용하는지 인지한다.
(사) 자신의 삶 속에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상담자로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스트레스를 인지한다.

(3) 수퍼바이지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책임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가) 수퍼비전 관계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약을 맺는다.
(나)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다루어야 한다.
(다) 수퍼바이지, 수퍼비전 그리고 수퍼바이저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라) 수퍼바이지와 계속되는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마)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이 수퍼비전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 수퍼바이지에게 비밀보장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수퍼바이지의 동의하에 또는 동의 없이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사) 사전동의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4) 오렌지카운슬러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절차적 책임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수련 프로그램 및 오렌지카운슬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가) 필요시 수퍼바이지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렌지카운슬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오렌지카운슬러에서 진행된 상담사례가 수련생의 숙련도에 비추어 상담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수퍼비전을 통해 인식한 경우, 수퍼바이지 뿐만 아니라 오렌지카운슬러에 직접 이 사실을 알려, 해당사례의 대체기관 의뢰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 수련생이 수퍼바이저의 이력, 자격, 학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퍼바이저는 본인의 이력,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과장·왜곡 없이 오렌지카운슬러에 제공해야 한다.
(라) 수퍼바이저는 오렌지카운슬러의 상담실습 및 수퍼비전 프로그램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담기관의 영리적 행위(교육활동 포함)와 관련하여 오렌지카운슬러의 수련생 교육 프로그램(수퍼비전,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워크숍 등)에서 홍보를 해서는 결코 안되며, 오렌지카운슬러 측에 대리 홍보를 요청할 수도 없다.

라.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다루어야 할 윤리적 문제

(1) 부적절한 심리상담 서비스 수정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행하는 상담과정 중에 부적절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적절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전동의를 얻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실패
- 내담자를 포기하는 것
- 계획된 상담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
- 부적절한 진단과 평가 기술의 사용
- 내담자의 본모습과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
- 자살에 관해 합리적인 상담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 위험한 내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
- 적절하게 수퍼비전하지 못한 것
- 사례의 의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내담자를 의뢰하지 못한 것
- 부적절한 방식으로 상담료를 받은 것
-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경력을 거짓으로 말한 것
- 내담자와 계약을 깬 것
- 내담자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여 내담자를 병리화시키고, 과도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여 내담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2) 수퍼비전에서 고려할 점

(가) 사전동의 작업을 충분히 하였는가?

수퍼바이지가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상담의 구조화를 잘 하지 못한 경우 윤리적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 내담자와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자살이나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담자는 비밀보장을 깨뜨릴 수 있다는 조항을 알려 주어 서명하도록 하고,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을 수퍼바이저와 상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이로써 사전에 구조화되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필요없는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퍼바이지가 상담

첫 회기 때 얼마나 구조화하였고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비밀보장을 준수하고 한계를 알고 있는가?

수퍼바이지가 상담을 할 때 비밀보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 가지고 오는 대화록, 녹음파일 등 임상 자료에 대하여 내담자에게 동의를 받고 수퍼비전에 가지고 오는 것인지, 수퍼바이지가 상담내용에 대해 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려 주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내담자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해 상담을 구조화할 때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비밀보장의 예외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내담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

(다) 성적인 관계 금지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금지시키는 것은 내담자와의 관계 그 자체가 권력의 불균등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노출하고 그것에 대하여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과 기술에 의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전문적 관계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사랑의 감정은 태생적으로 순수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상담관계 자체에서 내담자는 상담자가 가지는 권력의 높은 위치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생겨나는 감정일 경우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불공정한 감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에서도 전문가의 윤리가 적용될 수 있다.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의 사이는 학생과 교수, 수련생과 수련감독자 등 관계 자체에 있어서 수퍼바이지의 상담자 자질과 능력을 평가해야만 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수퍼바이저를 착취하거나 특혜를 주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내담자에게서 성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 그러한 느낌이 수퍼비전 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퍼바이지가 표출할 수 있도록 평상시 신뢰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억압적인 수퍼비전 환경 때문에 수퍼바이지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성적인 느낌이 수퍼비전에서 적절하게 표출되어 다루어지지 않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성적 행동으로 표현될 경우 수퍼바이저도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

(라)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알기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어느 범위까지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 내담자가 더 좋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과도하게 상담자의 능력을 부풀린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담자 능력 이상의 상담기술이 필요할 경우 계속 상담을 진행시키지 말고, 적절한 다른 상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의 범위 안에서 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모두 자신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꾸준히 훈련받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킬 의무가 있다.

상담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루에 10여명 이상 상담을 한다거나 학업이나 다른 스케줄로 인하여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상담한다면, 상담자 자신이 지치는 것은 물론 상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수퍼바이지가 이렇게 과욕을 부려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를 한다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마.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윤리

상담관계에서도 전문적 윤리가 요구되듯이, 수퍼비전에서도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는 수퍼비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1) 수퍼비전의 과정과 기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상담 초기에 구조화가 중요한 것처럼 수퍼비전의 초기에 수퍼바이지의 기대가 무엇이고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수퍼비전은 구조화된 공간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퍼바이지는 수퍼비전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가 충분히 전달되고 서로 소통되었을 때 평가도 객관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오렌지 카운슬러 상담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련생에게도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퍼비전을 받는 동안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니는 책임을 수퍼바이저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 이중 관계 금지

수퍼바이저에게 교육분석을 받거나 교수에게 개인상담을 받는 이중 관계에 대해서 엄격히 인식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한국의 상담수련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다른 교과과목에서 동일한 교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교과목 학점에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한 교수로부터 다른 과목을 수강할 경우 개인 수퍼비전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가) 다중 역할(예: 교사, 심리상담 수퍼바이저, 심리검사 수퍼바이저 등)을 하고 있는 수퍼바이저는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수퍼바이지에게 각각의 감독 역할과 관련된 기대와 책임을 신중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나)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도 맺어서는 안되며,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또는 상호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수퍼바이저의 객관성과 전문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는 수퍼바이지와의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그러한 수퍼비전 관계는 종료되어야 한다.

(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대체하여 심리치료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수퍼비전 동안 개인적인 문제는 수퍼바이지의 전문적 기능과 내담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만 언급되어야 한다.

(3) 수퍼바이저의 영향력 인식

수퍼바이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입장은 수퍼바이지의 상담방법론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심리 내면 세계를 드러내어 상담사례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성장과 보호를 촉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수퍼바이저 자신의 가치관과 상담방법론을 배타적으로 심어 주려는 억압적 관계로 조성하거나 수퍼바이저의 위치를 이용하여 착취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수퍼바이지에게는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수퍼비전에서 받는 좋은 영향보다는 수퍼바이저로부터의 상처와 악영향이 더 뿌리깊게 수퍼바이지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수퍼바이저의 평가는 수퍼바이지의 전문가로서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의 권력에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 수퍼바이저는 이와 같은 권력적인 불균형의 구조를 인식하고 수퍼바이지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4) 물물교환 금지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 경제적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수퍼비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수퍼바이지가 선물을 주는 경우 수퍼바이저의 평가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물거래식으로 상담 수퍼비전에 임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수퍼바이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수퍼비전 관계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수퍼비전 관계의 투명하지 못한 물물교환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퍼비전 비용 대신에 수퍼바이지가 가르쳐 준 언어 교육이 예상했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수리 받은 자동차가 고장 난다면, 받은 미술품이 가짜이거나 혹은 가격이 치솟았다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심리가 어떨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상담자 역할 금지

수퍼비전 관계에서 수퍼바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주로 수퍼바이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과제들이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수퍼바이지의 통제욕구가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지 못하여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이슈에만 집중하는 경우, 수퍼바이지의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내담자가 경험한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함에 대한 통찰을 돕기 위해 수퍼바이지와 어느 정도 상담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경우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6) 수퍼바이지에 대한 평가

(가) 수퍼바이지 평가서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에 대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수퍼바이지에게 주기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임상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퍼바이저는 온라인 수련수첩을 통해 수퍼바이지 평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렵수첩을 통한 평가 외에 상담 수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오렌지카운슬러)의 수퍼비전 담당자가 매월 요청하는 <수퍼바이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수퍼바이지 평가서>는 모든 수퍼바이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내담자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위해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퍼비전을 받는 과정에서 태도가 불량한 수퍼바이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수퍼바이저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수퍼바이지에 대해 <수퍼바이지 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1) 수퍼바이지가 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조치사항에 대한 조언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2) 수퍼바이지가 고의적으로 정해진 수퍼비전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3) 소그룹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바이지가 본인이 아닌 다른 동료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을 참관하는 데 있어 수퍼비전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
4)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로부터 내담자 의뢰 및 위기대응 등에 대해 조언을 들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는 경우
5) 수퍼비전 보고서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수퍼바이지가 내담자에게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규정을 수퍼바이저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위반하는 경우

(나) 수퍼바이지 평가서 작성 이후의 절차(기관 차원)

<수퍼바이지 평가서>를 통해 자질과 수련태도에 있어 수퍼바이저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수련생에 대해서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비전 담당자를 포함해 오렌지카운슬러 운영관리자는 평가서 내용을 기반으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중요성이 클 경우, 평가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수련생의 오렌지카운슬러 수련 프로그램(상담실습 프로그램과 수퍼비전 프로그램 등) 참여를 즉시 종료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상담실습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퍼바이지의 결함이나 무능력을 수정하고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퍼비전 의무요건의 강화를 통해 오렌지카운슬러 수련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다.

(다) 이의 제기 절차

수련 프로그램 이용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제한되는 등의 통지를 받은 수련생은 수련 프로그램 배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평가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행위의 고의성 등에 관해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비전 담당자를 포함한 오렌지카운슬러 운영관리자는 대면 상황에서 수련생의 이의 제기 내용을 경청해야 하며, 이의 제기 과정 후에, 오렌지카운슬러 운영진은 회의를 재소집하여야 하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7일 내로 해당 수련생에게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 수퍼비전 프로그램 이용시 수퍼바이지(수련생)의 역할과 책임

수련생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따른다. 오렌지카운슬러는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 추가하여 오렌지카운슬러 상담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련생이 오렌지카운슬러에서 제공되는 수퍼비전 프로그램(이하 '수퍼비전')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안내하고자 하며, 수퍼비전 참여시 행동지침에 대한 위반은 마-(6)-(가)에서 언급된 수퍼바이저의 <수퍼바이지 평가서>를 통해 확인될 수도 있으며, 수퍼비전에 함께 참여한 다른 참관자에 의해서도 신고될 수 있다.

가.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시, 수퍼비전 보고서 양식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혹은 한국상담학회) 개인사례 수퍼비전 보고서를 이용해야 한다.

(2)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시, 내담자 개인정보와 내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마스킹하여야 한다.

(3)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시, 수퍼바이저가 요청하는 수퍼비전 보고서 분량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시, 폰트, 자간 등 보고서 양식에 대해 수정함이 없이 작성해야 한다.

(5)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시, 내담자 및 기관 정보 마스킹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제출 시, 축어록 포함(심리검사 수퍼비전시에는 불필요)하여 PDF파일로 암호처리를 하여 제출해야 한다.

(7) 보고서 제출 시, 축어록에 기록한 음성파일을 암호화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8) 보고서 제출 시, 파일명에 내담자 정보 혹은 내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표기되어서는 안된다.

(9) 보고서 제출 시, 수퍼비전 보고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보고서 제출 시, 기관이 요청한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수퍼비전 보고서 제출기한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연속 2회 혹은 누적 3회 발생할 시, 해당 수련생은 상담실습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참여 기간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11) 수퍼비전 보고서 제출 시 수퍼바이저가 판단하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퍼비전 보고서는 반드시 수퍼바이지 본인이 진행한 사례여야 하며, 본인이 진행한 사례가 아닌 것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상담실습 프로그램 참여는 강제로 중단될 수 있다.

나. 수퍼비전 참여

(1) 수퍼비전(소그룹 수퍼비전 포함) 시작시간 전에 수퍼비전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수퍼비전 장소에 1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연속 2회 혹은 누적 3회 발생할 시, 해당 수련생은 상담실습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참여기간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2) 수퍼비전 참여시 수퍼바이지가 학습태도에 있어 불량한 모습(예: 취식, 경청

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 평가서를 통해 평가내용을 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기관은 2. 마. (6) 규정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소그룹 수퍼비전 진행시 본인의 발표시간이 아닌, 참관의 경우에도 위 (1), (2)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수퍼비전 참여 후, 수퍼비전의 진행을 방해하는 동료 수련생을 확인하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수련생에 대해 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기관은 수련생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수퍼바이저의 수퍼바이지 평가서에 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수퍼비전 참여 시, 수퍼바이지는 수퍼비전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누구와도 경제적 거래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선물을 제공하거나 물물교환 등을 해서는 안된다.

(6) 수퍼바이지는 수퍼비전 진행에 대한 기관의 수퍼비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 수퍼비전 비용 취소 및 환불

(1) 수퍼비전 취소에 따른 수퍼비전 비용 환불은 수퍼비전 시작일(소그룹 수퍼비전의 경우 해당 그룹의 첫 수퍼비전 시작일을 적용함)로부터 10일 전까지 100% 환불 가능하며,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에는 50% 비용이 환불 가능하다. 7일 이내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상담실습 프로그램 참여시 수퍼비전 비용을 선납하여 참여하고 있는 수련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2) 상담실습 프로그램의 수퍼비전 의무 이수 요건의 충족은 수퍼비전 비용납부 여부가 아닌 수퍼비전 참여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즉, 비용 납부를 하였더라도, 수퍼비전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 수퍼비전 의무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 수퍼바이저의 권고사항 이행

(1) 상담실습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수련생은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바이저로부터 내담자의 병리성 및 초심자의 미숙성 그리고 상담사례의 위기성을 고려한 권고사항(내담자 리퍼, 심리검사 진행,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에 대해서 수퍼바이지는 이행해야 하며, 수퍼바이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복지와 안녕에 초점을 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수퍼바이저는 위기사례 대응 및 병리성 등에 대한 수퍼바이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퍼바이지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오렌지카운슬러 운영진에 내용을 알릴 수 있으며, 오렌지카운슬러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한다.

마. 온라인 수련수첩 승인요청

(1) 수퍼비전 진행일 이후 7일 이내로 온라인 수렵수첩 승인요청을 하기를 권장하며, 수퍼바이지는 아무리 늦어도 30일 이내로 수퍼비전 요건 인정과 관련해 온라인 수렵수첩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청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수련생의 경우에 대해서도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수퍼바이지는 본인이 수퍼비전 받은 사례에 한해 접수면접 등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 수련수첩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바이저가 주수련감독자가 아닌 이상, 수퍼비전 받은 사례와 무관한 사례에 대해 수퍼바이저에게 사례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수퍼비전 팀제의 경우에는 수퍼바이저의 주수련감독 기능을 하므로, 본인이 수퍼비전 받은 사례가 아닌 사례에 대해서도 수련수첩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퍼바이지는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바이저가 아닌 외부의 수퍼바이저에게도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련수첩 승인요청도 외부의 수퍼바이저에게 허락을 득하여 할 수 있다.

(5) 수퍼바이지는 접수면접 기록 등 상담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하며, 오렌지카운슬러에서 진행된 사례와 관련해서는 상담동의서, 생명사랑서약서 등에 대해 오렌지카운슬러 운영진에게 요청하여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바.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발전 및 개선에 대한 건의

(1) 수퍼바이지는 오렌지카운슬러 수퍼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윤리성과 전문성 향상의 차원에서 언제든지 오렌지카운슬러의 운영진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의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였을 때, 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오렌지카운슬러는 수퍼바이저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실확인을 명확히 한 후,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수퍼바이지에게 알려야 한다.

4. 수퍼비전 프로그램 운영진의 역할과 책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진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하며, 오렌지카운슬러라는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책임의식이 없이는 수련 프로그램의 발전 또한 요원하다.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수련 기간을 겪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수련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 수퍼비전 만족도 조사 실시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수퍼비전 프로그램 이용시 발생하는 수련생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한다.

나. 수퍼비전 윤리규정 개정

오렌지카운슬러라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퍼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참여하고 있는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포맷의 다양화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포맷은 개인 수퍼비전, 소그룹 수퍼비전, 팀제 수퍼비전 등 포맷(형식)이 다양해야 하며, 수련생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포맷으로 수퍼비전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련생이 수퍼바이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수퍼바이저에 관한 사전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다양한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 규정(별첨)

(기타 강령 내용 생략)

7.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가. 수련감독과 내담자 복지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나. 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1)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련감독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5)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6)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4)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된다.
(5)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1) 상담 교육자는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2)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3)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5) 상담 교육자는 수련중인 학회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상담자 양성에 기여한다.
(6)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 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10)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후 강령 내용 생략)